

청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(전문)

제 정	1997. 09. 30.
1차 개정	1997. 12. 24.
2차 개정	1999. 09. 04. 규칙 제1035호
3차 개정	2007. 11. 01. 규칙 제1190호
4차 개정	2013. 07. 26. 규칙 제1314호
5차 개정	2015. 06. 12. 규칙 제1384호
6차 개정	2016. 03. 30. 규칙 제1406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원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)이라 칭한다.

(개정 2007.11.1)

제2조(설립목적) 본 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(수곡동) 청주교육대학교 캠퍼스에 둔다.(개정 2015. 6. 12.)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원장) ①본 원은 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3.7.26)

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교직원) 본 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7조(심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
- 4.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
- 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8조(의결)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교육과정

제10조(과정) 본 원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과정과 전공과정을 둔다.

제11조(수업기간) 본 원의 수업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생은 수시로 모집 한다.

제12조(수업일) 본 원의 주 수업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지원자격)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다만, 특수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,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(선발방법) 본 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적으로 한다.

다만,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과정 등) ①본 원의 세부 교육과정, 수강정원, 교육기간 및 시간, 수강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총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학습비 등) ①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1항에 의한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(개정 2013.7.26)

제17조(수료 및 수료증교부) ①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5 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

제18조(자치회) ①학풍을 진작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9조(학생활동의 금지) 학생은 본 원 수강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20조(포상) 수강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수료시 포상 할 수 있다.

제 6 장 회 계

제21조(회계연도) 본 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2조(예산편성) ① 원장은 회계 시작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6. 3. 30.)

② 원장은 회계 종료 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3. 30.)

③ 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대학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(개정 2015. 6. 12.)

제23조(수입원) 본 원 운영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료(입학금포함)
2. 청주교육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수입

제24조(회계집령)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폐지규정) 청주교육대학교공개강좌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1406호, 2016. 3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